

의안번호	2221242
의 퇴 인	이달회의원
회 답 일	2026. 9. 21.
추계번호	26C46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5항 신설	현행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반환일시금 및 반납금과 관련하여, 외국인 가입자 등의 본국 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시금에서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7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 ※ 현행법 제77조제2항: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 2.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현행법 제78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음	의무규정
2	안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6항 신설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현행법 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92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외국인 가입자등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 이상인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5항·제6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 중 일부에게 지급할 반환일시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포함 → 본인 부담금만 포함), 반환일시금의 반납을 금지하는 경우 반납금 수입 및 연금급여 지출이 감소할 수 있음¹⁾
 - 현행법 제77조제2항의 경우 반환일시금 산정 시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본인 부담금만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반환일시금 단가가 감소할 수 있음
 - 현행법 제78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다시 국민연금 가입을 재개하면 반납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가입자의 생애동안 당초 반납받은 반환금을 상회하는 규모의 연금급여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 중 일부에 대한 반환일시금 단가를 낮추고, 반환일시금의 반납을 금지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급여 지출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 중 일부에게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92호)에 따라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은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나, 재정지출의 순감소액은 추계 대상이 아님

(이하 ‘추납’)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납보험료 수입 및 연금급여 지출이 감소할 수 있음

- 현행법 제92조에 따라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의 추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연금액 산정 시 추납 기간을 총 가입기간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험료 추납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됨
 - 현행법 제12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은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연금보험료의 추납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 추납을 금지할 경우, 추납보험료를 낼 사람의 수와 추납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고, 추납으로 인해 연금급여가 증가할 사람의 수와 연금급여 지출도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외국인의 수와 반납 의사가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반납을 못받게 되는 사람의 수와 반납금 규모, 현행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추납 의사가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추납을 못하게 되는 사람의 수와 그들이 지불하였을 추납보험료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부재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